

(參照)

【 별 칩 】

「성남시의회자문교수위촉및운영조례안」

- 제명 중 “자문교수단설치”를 “자문교수위촉”으로 하며,
- 제1조 중 “자문교수단을 설치하고”를 “자문교수를 두고”로 하고
- 제3조 제1항중“자문교수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”를 “자문교수는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로 하며 중원이 필요할 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”로 한다.
-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, 제3조 제3항 중 “자문교수단 사무를”을 “자문교수 운영사무를”로 하고, “단 상임위원회별 자문교수 회의시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이 된다”를 삽입하며, “제3조 제3항”을 “제3조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전·현직 대학교수로서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성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”를 “전·현직 전임 강사급 이상 대학교수로 한다”로 한다

제6조 중 “단 보궐 자문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”를 삽입하고,

- 제7조를 삭제하며,
- 제8조 중 “소집한다”를 “소집하며 상임위원회 별로 소집이 필요할 시는 상임위원회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 한다”로 하고
- 제9조 중 “자문교수단에 자문을”을 “자문교수에게 자문을”로 한다.
- “제8조 내지 10조”를 제7조 내지 9조“로 하고
- 동 조례안 제1조부터 제9조 중에 있는 “자문교수단”를 “자문교수”로 한다